

발표요지

1990. 11. 1—1991. 2. 28

추계발표회

1990. 11. 3

19세기 영국의 아편문제와 ‘1868제약법’

하바드대 김 동 원

19세기 전반 영국에서는 아편이 서구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아편은 의학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흥분제”(stimulant)로서 아무 제한없이 사용되었는데, 마치 오늘날 아스피린처럼 약국이나 일반상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19세기 전반까지는 누구도 아편을 위험한 독극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아편에 대한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일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기껏해야 나쁜 습관 정도로만 여겨졌던 아편의 복용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의사의 치료가 요구되는 “병”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1868년에 제정된 제약법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편 판매를 규제하는 내

용을 담고 있었으며,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의사들의 연구결과 “중독”(addiction)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 이 글은 아편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1868 제약법(1868 Pharmacy Act)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전문집단이었던 의사들과 약제사들의 입장이 각기 어떻게 구별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적인 약재로 여겨져 온 아편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의사들은 당뇨병, 폐병, 매독, 콜레라, 류마티즘의 특효약으로 아편을 처방하였으며, 천연두, 이질, 백일해, 그리고 히스테리 치료에도 아편을 이용하였다. 아편은 또한 민간요법에서도 널리 쓰여지고 있었는데, 불면증, 치통, 설사, 부인병, 그리고 보채는 어린이를 달래는 경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세기 전반에는 아편을 주성분으로 하는 매약(patent medicine)들—가루약, 물약, 사탕약, 고약, 어린이 시럽 등—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들은 약국에서 뿐만 아니라 골목의 행상들에 의해서도 제한없이 팔리고 있었다. 또한 아편은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기분을 전환시키는 데에도 사용되었는데, 심지어 공장지대의 선술집에서 술대용으로 팔리기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아편은 별다른 효과적 처방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의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치료약이었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하층계급에게는 만병통치약이자 가정 상비약이

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편의 무제한적 사용과 그 부작용에 대해 처음 의문을 표시한 사람들이 의사들이 아니라 공중보건개혁자들(public health reformers)이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 개혁자들은 1830년대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아편중독에 의한 사망에 주목하였고, 특히 어린이들의 높은 사망률을 들어 아편금지를 촉구하였다. 당시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837년과 1838년에 독극물에 의한 사망은 총 543명이었는데 그중 186명(어린이 72명 포함)이 아편에 의한 사망이었고 184명(대부분 어른)은 비소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저명인사들의 아편에 의한 중독사도 대중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한편, 날로 증가하는 아편중독 사고는 점차로 의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결국 희생자를 구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로 의사들이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바로 그들의 의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아편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편의 어떤 작용이 더 중요한 것일까? 흥분작용(stimulant)일까, 아니면 진정작용(sedative)일까? 아편의 상습적인 복용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생명의 단축과 관련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편의 의학적 사용에 대하여 우리 의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두 문제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내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실상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가치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던 반면, 소수이나마 공중보건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아편중독의 폐해를 주장했다. 일례로, 런던

의 환락지대인 Soho에서 개업하고 있던 G. R. Mart는 아편이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아편중독의 폐해가 알콜중독의 폐해와 비견될 만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Benjamin Brodie, Henry Halford, Anthony White와 같이 당시 영향력있던 의사들도 중독의 폐해를 고발하는 문서에 주저없이 서명했다. 총 25명의 의사들이 서명한 위 문서에서 서명자들은 아편의 지속적인 복용이 “소화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파괴하고, 사고력을 약화시키며, 한 인간을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자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이 아편중독의 폐해를 주장할 때 의학적인 이유 외에 “도덕적”인 이유를 들었다는 점인데, 의학적 문제로만 규정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사들의 반아편운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는데, 대개 보다 적극적이었던 공중보건개혁자들의 “조언자”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19세기 중반부터 가열되기 시작한 반아편운동은 마침내 1857년 하원에 제출된 독극물 규제법안에 아편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한다. 아편을 포함한 모든 독극물들을 열쇠가 있는 상자에 보관하고, 성인에게만 그 판매를 제한하며, 판매시에는 등록 뿐만 아니라 제3의 증인을 요구하는 이 엄격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편의 사용이 대폭 감소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했다. 무엇보다도 아편을 “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수가 줄어들 것인데, 바로 이점이 공중보건개혁자들이 노리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아편중독 사고는 이와 같이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상했던대로 약제사들은 이 법안의 상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아편이나 아편을 주성분으로 하는 매약들을 비소 등의

독극물과 같이 취급하는 점에 특히 반대했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약제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한 진정한 이유가 아편의 규제에서 오게 될 수입의 감소에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했다. 실제로 법안의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던 청문회에 참석했던 약제사들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였다. 그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아편사용을 규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서 거리의 상점에서 누구나 아편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아편판매가 자신들보다 훨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손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한마디로 약제사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거리에서의 아편판매를 근절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판매를 독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건강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이 더 우선되었는데, 전자는 의사들의 의무라는 편리한 이유를 달고 있었다.

약제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비해서 의사들은 여전히 통일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사들은 거리에서의 무분별한 아편판매를 제한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약국에서의 규제나, 아편을 독극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 그리고 아편중독의 폐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긋났다. 예를 들어 *Lancet*이라는 의학잡지의 1863년도 판에는 아편중독 사고에 대한 기사와 “스트리키닌(strychnine) 해독제로서 아편”, “아편을 당뇨병에 수렴제(astringent)로 사용했을 때 그 작용”과 같이 아편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아마도 18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아편운동을 벌였던 의사는 A. Thaylor뿐이었을 것이다. 그는 의회청문회에서 아편을 독극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

고, 1864년에는 “아편과 독극물 판매의 위험성”이라는 특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는 당시에는 여전히 소수였다.

아편에 대한 의사들과 약제사들의 관심의 차이, 그리고 상이한 접근태도는 이 두 전문집단을 대표하는 학회지나 잡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표 1은 1850년대와 60년대에 아편문제가 주요 4개 잡지에서 얼마나 자주 다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제사들의 관심이 의사들의 그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가지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약제사들은 아편문제를 독립된 논문으로 발표했던 반면, 의사들은 다른 주제의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편판매를 규제한 1868년의 제약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예를들어 아편판매를 규제한 1878년 *Pharmaceutical Journal*에는 18편의 아편관계 논문이 실렸던 반면, 의학관계 3개 잡지에는 통틀어 7편만이 실려 있었다. 글의 내용에 있어서도 의사들과 약제사들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사들의 논문들이 아편중독 사고나 의학적 치료의 유용성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었던 데 비해서, 약제사들의 논문들은 아편의 조제와 품질검사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약제사들은 적어도 아편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한 전문집단으로서 의사들보다 더 잘 조직되고 일치된 행동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사실 영국에서는 19세기 말까지 약제사들이 의사들보다 훨씬 잘 조직된 이해집단이었다. 이와 같이 잘 조직되고 통일된 로비활동의 결과로 약제사들은 공중보건개혁자들과 일부 의사들의 엄격한 아편 규제시도를 저지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86년 7월 31일, 아편을 포함한 독극물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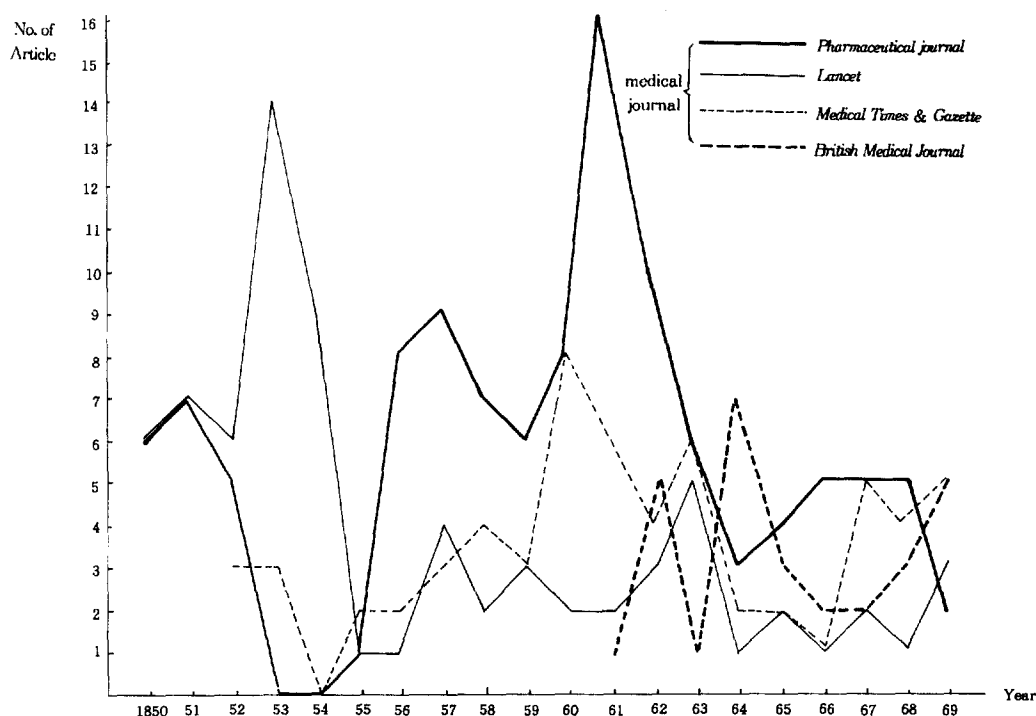


Figure 1. 김동원, '19세기 영국의 아편문제와 1868제약법' 부록 도표

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독극물의 무제한적인 판매가 종식을 고했고, 아편도 처음으로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약제사들이 10여년에 걸친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아편은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 비소같은 맹독성 약품과는 달리 취급을 받게 되었다. 즉, 자격이 있는 약제사만이 아편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으며, “독극물”(poison)이라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되었지만 판매량에는 제한이 없었으며, 구매자의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의 의무도 면제되었다. 또한 아편을 주성분으로 하는 매약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마디로 1868제약법은 약제사들이 원하는 바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법안으로 아편을 포함하는 모든 독극물의 판매를 약제사들의 수중으로 집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후로는 의사들도 아편을 조제할 수

없었으며 단지 처방만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불편은 그들의 지난 10년간의 나태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이러한 많은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68년 제약법은 확실히 아편문제에 있어서 일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아편중독에 의한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5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결과는 아편이 더 이상 거리 상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라 규제를 요하는 전문적인 “약품”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아편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1870년대부터 가열된 반아편운동은 “아편무역 억제를 위한 영국-아시아 협회(1874),” “주정의 연구와 치료를 위한 협회(1884)”의 성립을 통해서

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 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1880년대에는 Norman Kerr가 “중독(addiction)”이라는 개념을 완성시켜서 아편의 상습적 복용을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disease)”으로 규정하는 데 공헌했다. 이러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에 힘입어 1908년에 개정된 제약법에서는 아편과 아편을 포함한 모든 마약이 비소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868제약법은 마약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조연자의 역할만을 담당했던 의사들이 이 법안이 성립되는 과정과 1868년의 통과를 기점으로 아편문제를 의학적인 문제로 바꾸어 인식하게 되었다. 1868년 이후 의사들의 마약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는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의사들이 일찍부터 “사회문제”였던 아편중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래서 일찌된 행동으로 1857년에 상정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 아니면 최소한 Taylor와 같은 의사가 몇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醫零」에 나타난 茶山 丁若鏞의 「醫」에 대한 태도

서울대 김 대 원

茶山이 살았던 시대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으로서, 구시대적 폐단들이 여러방면으로 노출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의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

던 시기였다. 茶山은 이런 움직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유배지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의 방대한 저작 중에는 ‘醫’에 관계된 저작도 있어, 이것을 통해 그가 목격한 ‘醫’에 관련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도 볼 수 있다.

‘醫’에 관련된 저작은 다음과 같다. 의학 분야에 관한 저작으로는 마진 전문서적인 「麻科會通」, ‘醫’에 관한 여러 문제를 정리한 「醫零」이 있다. 「欽欽新書」를 통해 茶山の 법의학적 지식을 알 수 있으며, 「牧民心書」의 관질편에는 茶山の 의료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經世遺表」에서는 의료와 구휼 등과 관련된 의료기구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이러한 茶山の 저작 중 「麻科會通」과 「醫零」을 제외한 책들은 의학에 대한 전문서적이 아니어서, 이 책들을 통해서도 茶山の 의학의 내용과 醫에 대한 태도를 잘 알 수 없다. 「麻科會通」도 마진에 관계된 내용만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茶山 의학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반해 「醫零」은 의학이론에 대한 비판, 약재 다루는 법, 經驗方의 소개 등의 ‘醫’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된 책으로, 이 책을 통해 茶山の ‘醫’에 대한 태도와 의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茶山은 왜 의령을 저술한 것일까. 우선 「醫零」의 저작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연도가 1808에서 1811년 사이로, 유배지에서 저술된 후기 저작이란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민중들이 겪는 의료상실, 즉 이들에게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민중들은 醫者들의 처방을 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며, 醫者들은 나름대로 병의 원리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茶山の 지적대로 “병에 의사가 없는지 오래”인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茶山은 민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